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추가〉

■ 조 국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1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 국의원 등 2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7.
3. 회부연월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

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25세 미만이거나 2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한편(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신설 등),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적용되는 시효의 기산일을 개정법률 시행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u><신설></u> 6. ~ 8. (생략)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u>자녀와 손자녀</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	제3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형제자매</u> 6. ~ 8. (현행과 같음) ② ----- <u>자녀, 손자녀</u> <u>및 형제자매</u> ----- -----. ----- ----- -----

현행	개정안
로 한정한다. 1.·2. (생략) ③ (생략)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2. 검토의견

가.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추가

현행법 제3조제1항제5호1)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①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②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③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④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⑤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2항2)에 따르면,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25세 미만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생략)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8. (생략)

②·③ (생략)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생략)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25세 미만인 사람

이거나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손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에 한정됨.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25세 미만이거나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면 법 제8조제5호³⁾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

2.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생략)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 가. 재활운동비
 - 나. 심리상담비
3. 장애급여
 - 가. 장애연금
 - 나. 장애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 가. 장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급여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 가. 재난부조금
 - 나. 사망조위금

우 보상금 지급대상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할 때,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법률]

법 률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형제자매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형제자매 /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 성년 제매(弟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 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또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현행법에 따른 유족이 부재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25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25세 이상의 형제자매

4)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현행법에 따른 유족이 부재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경우 총 886명 중 0건, 장해유족연금의 경우 총 719명 중 69건인 것으로 파악됨.

가 있는 경우는 그 중 일부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직역 연금에 관한 법률 및 「군인 재해보상법」의 경우 현재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바,⁵⁾ 개정안이 다른 직역의 재해보상 제도나 그 밖의 급여 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는 법률]

법 률	관련 규정
국민연금법 (제73조)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군인연금법 (제3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형제자매가 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일반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군인 등 다른 직역에 적용되는 재해보상 제도나 그 밖의 유사한 사

5)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25세 미만인 형제자매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4. 8. 27. 발의, 의안번호 제2203219호)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회보장적 급여 제도에 미치는 영향, 추가적인 재정 부담, 현대의 가족구조에서 형제자매가 부담하는 부양의무 등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최근 10년간 유족이 부재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적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대의 가족구조가 통상 부모와 자녀의 3대로 구성되어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에 비해 사회보장 급부를 제공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 변경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적용되는 시효의 기산일을 개정 법률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 개정에 따라 행사가 가능해진 형제자매의 재해유족급여수급권에 대해 제54조에 따른 시효의 기산점⁶⁾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효 기산일의 변경은 제3조제1항 제5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1961년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 또는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

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 의 처

02)6788-5342
